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18-64 |
|----------|---------|

| | |
|-----|------|
| 제출자 | 거창군수 |
|-----|------|

1. 제안이유

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함.(안 별표 2)

| | |
|----|--|
| 현행 |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: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|
| 변경 | 무료. 다만. 전자파일로 변환 시에는 기존 수수료 그대로 징수 |

3 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·별표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8. 8.~8. 29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공개 대상 | 공개방법·수수료 | |
|-------|---|---|
| | 열람·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
| 전자 파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: 1,5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<u>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무료</u> -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,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-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·비디오 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 마다 5,000원 -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 마다 2,500원 - 매체비용은 별도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